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임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06
----------	------

발의년월일 : 2024. 7. 5.

발의의원 : 임인환 권기훈
김대현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동욱, 이성오
이영애, 이태손
황순자 의원

1. 제안 이유

대구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